

유역(지방)환경청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

1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귀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.

2. 따라서 귀 업체에서는 검사기관(한국환경공단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한국가스안전공사)에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정해진 기한 내(년 월 일)에 검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.

붙임 : 수시검사 사유서 1부. 끝.

유역(지방)환경청장

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/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/ 결재자(직위/직급) 서명
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 - 일련번호 (시행일자)

접수 처리과명 - 일련번호 (접수일자)

우 주소

/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전자우편주소

/공개구분